

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

일부개정 2021. 12. 7. 규정 제867호

1. 개정이유

- 올림픽연구센터를 스포츠정보원으로 이전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리
- ※ 「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정보원 운영 규정」 제정 건 동시 진행

2. 주요내용

- 올림픽연구센터 관련 조문 삭제(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)
- 자구 수정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붙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개정문

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8조에 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부속 체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” 를 “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연구소” 를 “체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인정한” 을 “인정하는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, 올림픽연구센터” 를 “건강증진·산학협력 중점센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장” 을 “위원회는 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무” 를 “위원회의 사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심의” 를 “심의·의결” 로 하며 “제4항 제3호 중 “제·개정” 을 “제·개정 및 폐지” 로 한다.

부 칙(제867호, 2021. 1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<u>제18조에 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부속 체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</u>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</u>-----</p>
<p>제2조(직무) <u>연구소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한</u> 사업</p>	<p>제2조(직무) <u>체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</u>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</p>
<p>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운동생화학실, 운동생리학실, 운동역학실, 스포츠심리학실, 종합체력측정실, 인문사회연구센터, 체육영재센터, <u>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, 올림픽연구센터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각 실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9. 올림픽연구센터는 올림픽에 대한 제반 연구 및 교육,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</u></p>	<p>제4조(조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훈련학생처장, 전임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장은 <u>회무</u>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소집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</u>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연구소 규정의 <u>제·개정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⑤ · ⑥ (생략)</p>	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 <u>위원회의 사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u>심의·의결</u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<u>제·개정 및 폐지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 칙(제867호, 2021. 12. 7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